

제261회 강서구의회 정례회
보건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
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18. 11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보건·복지위원회

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
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2018년 11월 28일
전문위원 김 동 영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18 - 72
- 나. 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6일
- 라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8일

2. 제안이유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반환금 지급을 위해 2018년도 폐기물
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언
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(기금) 반환사유
 - 강서구는 ‘제1차 처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한 폐기물
처리시설 설치 비용 32,527,245,600원에 대해 원금 및 기간에
따른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’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기금 변경 및
반환

○ 변경내역 :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

- 주요 변경내역(지출계획)

- 부천시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분담금 : 1,465,200천원 → 0원
- 강서자원순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: 2,000,000천원 → 0원
-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비 : 1,171,757천원 → 98,355천원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반환금 : 35,310,468천원(신규 편성)

- 세부 변경내역

- 2018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(단위 : 천원)

구분	2017년도 말 조성액	2018년도 조성계획		2018년도 말 조성액
		수입	지출	
기정액	33,327,080	562,857	3,636,957	30,252,980
경정액	34,902,960 (+1,575,880)	505,864 (△56,993)	35,408,823 (+31,771,866)	1 (△30,252,979)

- 수입계획 변경 세부내역 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경정	기정	증감	비고
200 세외수입	505,864	562,857	△56,993	2018년도 실제 발생이자로 변경
210 경상적세외수입	505,864	562,857	△56,993	
216 이자수입	505,864	562,857	△56,993	
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505,864	562,857	△56,993	
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	34,902,960	33,327,080	1,575,880	2017년 결산자료에 따라 2017년도 말 조성액 변경
710 보전수입등	34,902,960	33,327,080	1,575,880	
714 예치금회수	34,902,960	33,327,080	1,575,880	
714-01 예치금회수	34,902,960	33,327,080	1,575,880	
수입합계	35,408,824	33,889,937	1,518,887	

◦ 지출계획 변경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경정	기정	증감	비고
폐기물	35,408,824	33,889,937	1,518,887	
폐기물자원화	35,408,823	3,636,957	31,771,866	
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	35,408,823	3,636,957	31,771,866	
자치단체 등 이전	0	1,465,200	△1,465,200	
자치단체간 부담금	0	1,465,200	△1,465,200	부천시 자원화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부담금
시설비및부대비	98,355	2,171,757	△2,073,402	
시설비	98,355	2,171,757	△2,073,402	강서자원순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, 건립공사비
반환금기타	35,310,468	0	35,310,468	
과오납금 등	35,310,468	0	35,310,468	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반환금
재무활동(청소자원과)	1	30,252,980	△30,252,979	
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	1	30,252,980	△30,252,979	
예치금	1	30,252,980	△30,252,979	
예치금	1	30,252,980	△30,252,979	
지출합계	35,408,824	33,889,937	1,518,887	

※ 소송개요

- 사 건 명 : 부당이득금(2018가합511879)
- 당 사 자 : (원고)서울주택도시공사, (피고)서울특별시 강서구
- 청구취지 : 피고는 원고에게 32,527,245,600원과 기간에 따른 이자 지급
- 1심 결과 : 원고 일부승
- 판결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2,527,245,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7. 1.부터 2015. 3. 5.까지는 연 2.9%의, 그 다음날부터 2016. 3. 6.까지는 연 2.5%의, 그 다음날부터 2017. 3. 14.까지는 연 1.8%의, 그 다음날부터 2018. 3. 8.까지는 연 1.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※ 반환금 예상금액

(지급일 2018. 10. 26.기준/ 단위 : 원)

금 액	기 간	이자율	이자액	비 고
합계			5,669,989,042	
32,527,245,600	2014.7.1. ~ 2015.3.5. (248일)	연 2.9%	640,920,411	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,시행규칙 제19조의 3 ※1년 만기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
	2015.3.6. ~ 2016.3.6. (367일)	연 2.5%	817,636,927	
	2016.3.7. ~ 2017.3.14. (373일)	연 1.8%	598,323,087	
	2017.3.15. ~ 2018.3.8. (359일)	연 1.6%	511,880,818	
	2018.3.9. ~ 2018.10.26. (232일)	연 15%	3,101,227,799	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판 결 금 지급총액	38,197,234,642			

※ 2018. 10. 26.기준 판결금 지급 총액은 38,197,234,642원이나 반환지연에 따른 이자발생 부담(연 15% 적용시 일 평균 13,368천원)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가용재원인 기금조성액 35,310,468,000원을 우선 변경지급(2018. 10. 26.)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의회와 사전 협의함(2018. 10. 22.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, 「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

5. 검토의견

가. 변경 취지

본 안건은 “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” 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임.

나. 주요 변경내용

- 수입은 기정액 338억 8,993만 7천원 대비 15억 1,888만 7천원 증가한 354억 882만 4천원으로,
 - 2018년도 실제 발생한 이자를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5,699만 3천원 감액하였고,
 - 2017년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(=2017년도말 조성액)을 15억 1,888만 7천원 증액하였음.

- 지출은
 - 자치단체간 부담금 14억 6,520만원, 시설비 20억 7,340만 2천원, 예치금 302억 5,297만 9천원을 감액하고,
 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반환금 353억 1,046만 8천원을 증액하였음.

다. 종합의견

- 본 변경안은 우리구와 SH공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결과, 원고(SH공사) 일부 승소함에 따라 ‘강서구청은 SH공사로부터 받은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라’는 법원 판결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- 판결문에 명시한 이자율에 따르면, 우리구가 SH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은 2018년 10월 26일을 기준으로 381억 9,723만 4,642원이며, 반환 지연시 일 평균 1,336만 8천원의 지연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
- 반환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연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변경안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제6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(宅地)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내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,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)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(宅地)"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(이하 이 조에서 "택지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② 법 제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"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.

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납부금액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.

1.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: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
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

가. 소각시설의 경우: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,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

나.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: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·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

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

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.

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, 매립시설 및 퇴비화·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.

⑦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.

⑧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(財源)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